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 7. ~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 교부자료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다.

별표 제12호의 제출시기란 가목 중 “2월 말일”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65호나목의 제출시기란을 “매월 15일”로 한다.

별표 제6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라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한정한다)”로 신설하고, 제출시기란 중 라목을 “매월 15일”로 신설한다.

별표 제9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가입자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의 제출시기란 중 “7월 31일”을 “1월 13일”로 한다.

별표 제9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과세자료명란 중 “「임대주택법」 제19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로 한다.

별표 제11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3조의2”로 한다.

별표에 제120호부터 제12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121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122	법원행정처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123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자료에 관한 자료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이용 승인된 항목의 자료(단,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청	매월 1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교부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 개정규정 중 법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의 보조금 교부자료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6